

춘천지방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1나32665(본소), 2021나32672(반소) 판결

[부당이득금반환 · 기타(금전)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선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

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한주

변 론 종 결 2022. 11. 10.

판 결 선 고 2022. 12. 15.

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. 4. 27. 선고 2020가단691(본소), 2021가단 30064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(반소피고)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20,604,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3. 18.부터 2022. 12. 15.까지는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그중 7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

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본소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 57,667,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 : 원고는 피고에게 49,218,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3. 16.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7,667,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5면 19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이에 더하여 이 법원의 감정인 M의 감정결과와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리조텔의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19,493,000원(기초석공사 비용 6,772,000원 + 합판공사 비용 11,213,000원 + 야외 골프연습장 철거공사 비용 1,508,000원)을

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리조텔의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34,961,921원(15,468,921원 + 19,493,000원)이 된다.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조텔의 개보수공사비로 위 34,961,921원을 초과한 5,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.

○ 제1심판결 제8면 4행의 ‘15,468,921원’을 ‘34,961,921원’으로 고치고, 제8면 5행의 ‘34,531,079원’을 ‘15,038,079원’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8면 14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이 법원의 감정인 M의 감정결과와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야외골프연습장의 원상복구 비용으로 5,566,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야외골프연습장의 원상복구 비용으로 5,566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○ 제1심판결 제8면 18행부터 제9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원고는 피고에게 20,604,079원(= 정산금 15,038,079원 + 야외골프연습장의 원상복구 비용 5,566,000원) 및 이에 대하여 2021. 3. 16.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. 3. 18.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12. 15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,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,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장두봉, 판사 신흥호, 판사 여현주